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62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7년 12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수급대책은?

I.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어려움

최근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배치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유아특수교사 교수 입장에서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해나가야 한다는 입장까지로 다양함.

-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음.
 - ▶ 즉,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
 - ▶ 이러한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5세 이상, 2017년도에는 만4세, 2018년도에는 만3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이상의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과 근무환경(보조 인력 및 제반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3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 현장, 관련전문가들은 국회 토론회¹⁾ 및 이정림 외(2017)²⁾ 연구에서의 관련자 면담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
 - ▶ 원론적 입장: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모든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
 - ▶ 현실적 입장: 교육부 발령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관장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이정림·이윤진·박현옥 2017)』에 기초함.

1)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2017). 장애아 보육 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 절충적 입장: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으로, 이 기간 동안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방안 제안함.
-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한 간극은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II. 장애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는 교육기관에 비해 더 많지만,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으로 유아특수교사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

-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유아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58명, 4,079명, 1,635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872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음.
 - ▶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186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
 - ▶ 그러나 11,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
 - ▶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1>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

단위 : 기관 수(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42 (1,249)	103 (3,915)	6 (210)	25 (767)	1 (17)	0 (0)	0 (0)	177 (6,158)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667 (2,997)	37 (174)	34 (195)	150 (668)	15 (20)	1 (0)	7 (25)	911 (4,079)
일반 어린이집	97	79	48	799	282	7	30	1,342 (1,635)
소계	806	219	88	974	298	8	37	2,430 (11,872)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30, 132.

-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 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아 보육교사 배치 현황은 <표2>와 같음.
 - ▶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7.6월 기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표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

단위 : 명

어린이집 유형	장애아 수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6,158	1,279	81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079	827	544
계	10,237	2,106	1,354

주: 〈표2〉의 특수교사 수치는 유아특수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44, 147.

- 현재 보육통계 상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를 통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장애 유아 현원 파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임.

Ⅲ.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 종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
 - ▶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총 120여명을 양성하고 있음.
- 이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아특수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학과가 부재한 상황으로 천안이남 지역에서만 양성되고 있음.
 - ▶ 반면, 유아특수교사 수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에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임.
 - ▶ 배출된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 및 취업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2개 전문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특수교사 대체 역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현장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운 구조임.
- 현재 대학 평가 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경우 임용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2017년 12월 1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 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사 배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함.

IV.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대책 마련

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단기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함. 첫째,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
 - ▶ 교사 교육 내용, 방법(온라인/집체 등), 횟수, 장소,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 어떤 전달체계(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함.
 - ▶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
- 둘째,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 마련 제안
- 셋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함.
 - ▶ 고경력 가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시에도 임용률 인정 수용 협의 등
-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 필요
- 특수교사 수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장애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필요
 - ▶ 장애 영아, 장애 유아,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유아특수교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함.

이정림 연구위원 leettu@kicce.re.kr